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김 윤 · 정태호
허성무 · 김재원 · 차지호
박상혁 · 조인철 · 유동수
김상욱 · 김현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방송법」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,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,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동·하계올림픽,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 등(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)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,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

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, 보편적시청 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76조 및 제76조의2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 및 제3항”을 “제1항, 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심의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민관심행사등으로서 일반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시청할 필요가 있는 행사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(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)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,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: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
2.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: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

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

제76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”를 “그 밖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”로 한다.

- ③ 제9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에 관한 분쟁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·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제91조부터 제91조의6까지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 및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76條(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第76條(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국민관심행사등으로서 일반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 이 시청할 필요가 있는 행사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 하는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 자등(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 한다)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, 정당한 사 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되며,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 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 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④</u> 방송사업자는 <u>제1항 및 제3 항의</u>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.</p>	<p><u>⑤</u> -----<u>제1항, 제3항 및 제4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<u>⑤</u>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<u>제</u></p>	<p><u>⑥</u> -----<u>제</u></p>

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76조의2(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5항-----

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심의-----

-----.

1.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: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

2.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: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

제76조의2(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9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에 관한 분쟁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·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제91조부터 제91조의6까지를 준용한다.

⑤ 그 밖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-----

-----.